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가족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식에 대한 연구

## A Research of Recognit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ople of Family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Deinstitutionalization of Disabled

김정현

울산복지상담연구소

Jung-Hyun Kim(holykim1009@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 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탈시설 | 자립생활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 가족융합 |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research of recognit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ople of famil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October to September 2018 and 810 ca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about half of the families of groups and those who perceived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deinstitutionalization were divided into half. and consent to cegislation, local government efforts, independence, consent to deinstitutionalization family perceptions of disagreement of independence were identified as having no low information provid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as a lack of provision of services or information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it was confirmed that proper information transfer education on policies and services is needed to have accura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In addition, the agreement on legislation, local government efforts, Independence, consent to deinstitutionalization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systematic information education support are needed to ensure proper recognition of user's family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to ensure healthy independence of users.

■ keyword : | Deinstitutionalization | Independent Living |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Disabled | Family Integration |

## I. 서론

최근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탈시설화 정책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입소자를 끌어내는 것,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립을 기반으로 나아가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정책으로 자립 주민이 취약한 사람과 어울려 좋은 자립을 만들기 위한 즉,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변화, 생활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사유화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장애인의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경험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탈시설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과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며,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1].

이에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개정을 통한 거주시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용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의 자립 내 거주시설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거주시설의 질적, 양적발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근거 자료로 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배경

### 1. 탈시설화

탈시설은 20세기 초부터 시설화의 문제점에 대한 바

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도되어 온 현실적인 실천운동이다. 이는 대규모 시설수용에 노출된 비인간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관심의 증대로부터 불필요한 입소를 방지하고 수용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장애인 자립에서의 생활을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러한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격리·보호방식의 과도한 시설수용을 방지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동시에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보다 탈시설의 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

미국에서 탈시설화는 1960-70년대를 거쳐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발전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대규모 수용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통하여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1957년 지역사회정신보건법 제정을 통하여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됨에 따라 이전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되어 있던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피하게 되며 이러한 정책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진행하였다[3].

이러한 탈시설화의 흐름을 따라 1980년대 초부터 미국 각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대규모 장애인 시설을 탈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립으로부터 격리된 시설들이 모두 사라지는 주들이 생겨났다. 분리, 집단수용이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장애인수용시설 대신에 1~6명 정도의 장애인이 자립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들이 확대되기 시작되는 시점이었다[2].

1950년대부터 영국에서 '시설로부터 자립'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자립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의 발전과 더불어 환자의 조기퇴원과 여러 방법의 탈시설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책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자립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장애인등이 자립 내에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를 사정하고, 지원되어야 할 대인사회서비스를 계획,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탈시설화 정책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중심으로 자립에 기초하는 프로그램을 실시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1].

## 2. 탈시설화를 둘러싼 쟁점

탈시설화 운동에서 주장하는 통합과 분리의 문제는 하나의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고, 시설에서 자립으로의 이전이 반드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의 환경개선, 소규모화, 사회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면 물리적 공간의 형태와 상관없이 장애인의 정상적 삶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2].

탈시설화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시설의 존재는 그 본연의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이고, 시설의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Jones(1984)는 정상화와 탈시설화에 대한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본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시설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시설화와 탈시설화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3].

세 번째 비판은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과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며,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염려의 시각이 많이 있으며 특히,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탈시설화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 있어 왔다[4].

탈시설화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은 특히 장애인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거주시설의 환경 개선 내지 서비스 질 향상과 정책이라는 전략에 치중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탈시설을 실시하는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장애인 가족의 부담 증가, 대안 거주시설의 부족, 퇴소 후 연계적인 서비스의 미흡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탈시설 정책이 구현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오히려 이 때문에 거주시설 수가 증대하는 현상까지 보여 온 것이 최근까지의 상황이기도 하다[1].

또한 장애인의 출현과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족 등의 비공식적 지원과 더불어 주거지원, 사회돌봄 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 노동의 증가, 부모의 고령화에 따라 비공식적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상 법률적 보장은 넓지 않으며 가족의 비공식적 보호에만 의존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3].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미래 거주와 지원에 대해 다양한 선택대안이 존재하여야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연구문제

#### 1.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시설 배포 또는 우편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810명이며 이 중 남성은 382명(41.0%), 여성 428명(56.9%)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20대가 22명(2.90%), 30대 60명(8.0%), 40대 112명(14.9%), 50대 252명(33.6%), 60대 이상 364명(41.6%)으로 구성되었다.

#### 1.2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법제정 동의 여부, 자치단체 노력여부 및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법제정 동의 여부, 자치단체 노력여부 및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복지학회 연구위원회(2018)에 의해 개발된 탈시설 욕구조사설문지를 사용하였다 [5].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인은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이 생각한 이용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인 가 하는 부분과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여부이다. 각각의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귀 이용자가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였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이용자가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였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이며 리커트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인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가족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법제정 동의 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이다.

각각의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로 예, 아니오의 선택문항이며, “알고 있다면, 그 법의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역시 예, 아니오의 선택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귀 이용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이 장애인들의 자립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이용자가 사회통합(문화, 체육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달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이용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예 1점, 아니오 2점의 선택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도구는 SPSS 23.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3.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응답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와 상관관계는 각각 [표 1][표 2]과 같다.

요인의 상관관계를 보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 여부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여부는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 여부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및 자치단체노력 여부와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는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응답수 |
|-----------------|------|---------|-----|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 1.53 | .50483  | 809 |
| 법제정 동의여부        | 1.51 | .83373  | 602 |
| 자치단체노력여부        | 1.47 | .82401  | 626 |
| 자립가능성           | 1.95 | .21929  | 810 |
| 탈시설 동의여부        | 1.98 | .17152  | 810 |
|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    | 4.40 | 1.05002 | 809 |
|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 4.57 | .84144  | 809 |

표 2. 상관관계

| 구분              | 탈시설 지원법 인지여부 | 법제정 동의여부 | 자치단체노력여부 | 자립가능성 | 탈시설 동의여부 |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 |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
|-----------------|--------------|----------|----------|-------|----------|--------------|--------------|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 1            |          |          |       |          |              |              |
| 법제정 동의여부        | -.601**      | 1        |          |       |          |              |              |
| 자치단체노력여부        | -.507**      | .901**   | 1        |       |          |              |              |
| 자립가능성           | .000         | .000     |          | 1     |          |              |              |
| 탈시설 동의여부        |              |          |          |       | 1        |              |              |
|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    |              |          |          |       |          | 1            |              |
|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              |          |          |       |          |              | 1            |

|             |         |        |        |        |        |        |   |
|-------------|---------|--------|--------|--------|--------|--------|---|
| 자립가능성       | -.123** | .169** | .207** | 1      |        |        |   |
|             | .000    | .000   | .000   |        |        |        |   |
| 탈시설 동의여부    | -.171** | .194** | .197** | .659** | 1      |        |   |
|             | .000    | .000   | .000   | .000   |        |        |   |
| 퇴소 후 자립생활긍정 | -.056   | .199** | .205** | .528** | .453** | 1      |   |
|             | .118    | .000   | .000   | .000   | .000   |        |   |
|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 | -.122** | .288** | .292** | .515** | .483** | .609** | 1 |
|             | .001    | .000   | .000   | .000   | .000   | .000   |   |

2. 회귀분석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요인에 의한 자립생활 긍정여부와 자립생활 준비여부와 관련성은 [표 4][표 5]와 같다. 요인은 예, 아니오 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의 여부 또는 찬반 여부의 결과를 [표 3]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 3. 요인의 응답결과

| 문항                  | 빈도  |     | 퍼센트(%) |      | 결측  | 합계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 366 | 441 | 45.2   | 54.4 | 2   | 809 |
| 법제정 동의 여부           | 28  | 439 | 3.5    | 54.2 | 135 | 602 |
| 자치단체노력여부            | 60  | 428 | 7.4    | 52.8 | 138 | 626 |
| 자립가능성               | 73  | 737 | 9.0    | 91.0 | 0   | 810 |
| 탈시설 동의여부            | 58  | 751 | 7.2    | 92.7 | 1   | 810 |

요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인지한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역할을 감당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시설에 위탁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따른 인식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 나머지 동의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탈시설법 지원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이 요구되어진다[11].

표 4. 요인의 인과관계-자립생활 긍정여부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R2   | 수정된 R2 | B      | $\beta$ | t      | $\rho$  |
|-----------------|--------------|------|--------|--------|---------|--------|---------|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 | .003 | .002   | 4.579  | -.056   | -1.565 | .118    |
| 법제정 동의 여부       |              | .040 | .038   | 4.018  | .199    | 4.931  | .000*** |
| 자치단체 노력여부       |              | .042 | .040   | 3.993  | .205    | 5.180  | .000*** |
| 자립가능성           |              | .279 | .278   | -.527  | .528    | 17.232 | .000*** |
| 탈시설 동의여부        |              | .205 | .204   | -1.090 | .453    | 14.093 | .000*** |

\*p<.05 \*\*p<.01 \*\*\*p<.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와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여부의 관계는  $t(1.96, p>.05)$  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6, p<.001$ ) 즉 장애인 탈시설에 동의하고 장애자녀의 자립가능성이 높으면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의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요인의 인과관계-자립생활 준비여부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R2   | 수정된 R2 | B     | $\beta$ | t      | $\rho$ |
|-----------------|---------------|------|--------|-------|---------|--------|--------|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 퇴소 후 지역 사회 생활 | .015 | .014   | 4.878 | -.122   | -3.405 | .001** |

|           |    |      |      |       |      |        |         |
|-----------|----|------|------|-------|------|--------|---------|
| 법제정 동의 여부 | 준비 | .083 | .081 | 4.115 | .288 | 7.281  | .000*** |
| 자치단체 노력여부 |    | .085 | .084 | 4.119 | .292 | 7.568  | .000*** |
| 자립가능성     |    | .265 | .264 | .717  | .515 | 16.656 | .000*** |
| 탈시설 동의여부  |    | .233 | .232 | -.123 | .483 | 15.302 | .000*** |

\*p<.05 \*\*p<.01 \*\*\*p<.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6, p<.001) 이것은 장애인 탈시설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경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도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 V. 결론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긍정 여부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여부는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긍정 여부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준비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및 자치단체노력 여부와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준비는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립가능성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준비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역할을 감당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시설에 위탁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따른 인식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

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보전달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와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긍정여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탈시설에 동의하고 장애자녀의 자립가능성이 높으면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긍정의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인지여부,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인 탈시설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 경우 퇴소 후 지역사회생활 준비에도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탈 시설 전, 후 이용인 가족의 인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장애인 가족 맞춤형 정보제공과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의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거주시설의 확충과 퇴소 전, 후 연계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가족은 활발한 사회적 관계가 없어 직업훈련이나 자립프로그램 정보 취득의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즉 장애인 혹은 장애인 보호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질을 변인으로 하여 보다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장애인 탈시설 법 제정에 따른 거주시설 이용인 가족의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탈시설 후 자립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또한 이용인 가족의 일부가 지적,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충분히 담아 내는 데 있어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기법이 개발, 활용되어 보다 발전된 형태의 후속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양육스트레스 대처와 가족탄력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 pp.96-107, 2019.

**참 고 문 헌**

[1] 감정기,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17권, 제37호, pp.7-48, 2012.

[2] 이성규,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말리제이션: 정상화개념의 형성과 진화*, 흥익재, 2001.

[3] 유동철,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합의,” 상황과복지, 제31권, pp.47-84, 2011.

[4] 정재원, “맹목적인 탈시설화의 위험성,” 장애와 사회, 제1호, pp.16-30, 2003.

[5] 국제사회복지학회, *탈시설 욕구조사*, 국제사회복지학회, 2018.

[6] 전지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제16권, 제2호, pp.161-174, 2016.

[7] 박승탁, 황석웅, “그룹홈 생활에 따른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신지체연구, 제9권, 제3호 pp.195-216, 2007.

[8] 박형진, “배제와 포함의 복지정치: 장애인 생활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로벌 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1호, 2012.

[9] 윤예숙, 조성열, 변용찬, 송근창, “장애인 재활전문가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 pp.559-573, 2019.

[10] 김연명,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민주법학, 제45호, pp.149-178, 2011.

[11] 김지훈, 김경호, “자살충동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 pp.634-647, 2019.

[12]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8.

[13] 김용득,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No.1, 통권1호, pp.147-178, 2005.

[14] 이정은, 최연옥, “ADHD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저 자 소 개**

김 정 현(Jung-Hyun Kim)

정희원



- 2016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박사수료)
- 2019년 1월 ~ 현재 : 울산복지상담연구소 대표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영성